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25일, 김성기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5년 10월 29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성기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창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주민 주도 관광사업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호)
-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4조제3호)
- 띄어쓰기 등 자구 정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김성기 의원
- 제안일자 : 2025. 9. 25.
- 회부일자 : 2025. 10. 29.
- 상정일자 : 2025. 11. 3.

2. 제안이유

- 평창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 주도 관광사업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호)
-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4조제3호)
- 띄어쓰기 등 자구 정리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7호에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 안 제4조제3호를 신설하여 주민 주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의 조항을 인용 함에 있어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자구를 정리함.

5. 종합검토의견

-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3~'27년)에서 지역 관광시대 구현을 목표로 제시한 만큼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공공성을 조화시킨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군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군 관광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기 의원)

의안 번호	490
----------	-----

발의연월일: 2025년 10월 14일

발 의 자 : 김성기 의원

찬 성 자 :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원

1. 제안이유

- 평창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 주도 관광사업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7호)
- 나.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4조제3호)
- 다. 띄어쓰기 등 자구 정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불임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9. 29. ~ 2025. 10. 13.(15일간), 의견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를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진흥법」 제45조”를 “「관광진흥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군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한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을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4. ~ 6. (생략) <p><신설></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 3. ----- 「관광진흥법」 제45조----- -----. 4. ~ 6. (현행과 같음)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군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p>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p><신설></p>	<p>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현행과 같음) 3. <u>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u>

2. (생략)

제10조(보조금)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보조금) ① ----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연락처	033-330-2250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찬성의원 서명(날인)부

○ 발의: 김성기 의원

구분	직 위	성 명	서명(날인)
1	평창군의회 의원	심현정	심현정
2	평창군의회 의원	이은미	이은미
3	평창군의회 의원	이창열	이창열